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실태 조사〉

■ 서왕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3955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광석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실태 조사	2

I. 개요

1. 서왕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395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서왕진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9. 12.
- (3) 회 부 일 : 2024. 9. 1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적정 인건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사 등의 다수가 업무 현장에서 신체적·언어적 폭력 등 각종 인권침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인권침해 피해 실태를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은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가의 관련 실태 파악이나 정책 수립 등의 효과적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범위에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인권침해 실태를 포함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실태 조사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하고, 인권침해 실태 등을 포함한 조사 결과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 ③ (생략)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④ ----- ----- -----인권 침해 실태 및 제3항에----- ----- ----- -----.
<신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신 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제4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
------------------	--

나. 검토의견

□ 사회복지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은 약 6.2만 개소, 종사자는 약 72만 명에 이르고,

최근 5년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건수는 매년 9만 건에 달하는 등 사회복지사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 종사자 현황 >

(단위: 개소, 명, '22.12월말 기준)

구분		계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 질환자	노숙인	결핵· 한센	지역 자활 센터	사회 복지관	어린이집
전체	시설수	62,543	20,226	6,133	3,980	408	140	7	250	476	30,923
	종사자	724,206	322,902	26,362	43,133	3,685	1,780	104	2,632	11,612	311,996
생활	시설수	9,251	6,365	935	1,551	290	103	7	-	-	-
	종사자	170,145	132,998	12,086	20,348	2,999	1,610	104	-	-	-
이용	시설수	53,292	13,861	5,198	2,429	118	37	-	250	476	30,923
	종사자	554,061	189,904	14,276	22,785	686	170	-	2,632	11,612	311,996

자료: 보건복지부

< 연도별 자격증 발급 현황 >

(단위 : 건, '23.12.31. 기준)

연 도	총계		1급		2급		3급	
	당해연도	누계	당해연도	누계	당해연도	누계	당해연도	누계
2018	81,607	1,019,647	7,311	146,119	74,177	859,964	119	13,564
2019	87,472	1,107,119	7,747	153,866	79,724	939,688	1	13,565
2020	100,224	1,207,343	8,427	162,293	91,794	1,031,482	3	13,568
2021	93,535	1,300,878	16,355	178,648	77,174	1,108,656	6	13,574
2022	90,915	1,391,793	9,073	187,721	81,841	1,190,497	1	13,575
2023	89,061	1,480,854	9,740	197,461	79,320	1,269,817	1	13,576

※ 사회복지사 3급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등에게 부여되는 자격이었으나, 2018년 이후 2급으로 통합·정리되었음.

자료: 보건복지부

□ 현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는 현행법 제정¹⁾ 이후 3년마다 실시하여 총 4차례 실시되었음. 주로 보수 수준, 지급 실태,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등을 조사하였으나,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구체적인 실태조사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의 일반 현황, 사회복지사들의 보수 수준, 퇴직금 및 휴가, 승진 등 근로여건, 역량 개발 현황, 종사자 권익 보호 및 처우개선 욕구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이에 따라 개정안은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추가하고, 그 결과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보임.

□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실태와 관련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실시한 조사²⁾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중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

1) 2011년 3월 30일 제정되었고, 2012년 1월 1일 시행되었음.

응답자의 70.7%로 조사되었으며, 폭력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클라이언트 문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 등으로 조사되었음.

< 사회복지사의 폭력 경험 유무 >

(Base: 전체 응답자, n=4,210)

폭력 유형 구분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일어난 적 있음		지난 1년간 한번이라도 일어난 적 있음		지난 1년간 일어나지 않았지만 최근 5년간 한번이라도 일어났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신체적 폭력	1,510	35.9	1,466	34.8	44	1.0
언어적 폭력	2,539	60.1	2,382	56.6	148	3.5
정서적 폭력	1,817	43.2	1,800	42.8	17	0.4
성적 폭력	969	23.0	960	22.8	9	0.2
경제적 폭력	1,110	26.4	1,065	25.3	45	1.1
의료적 위험	1,256	29.8	1,241	29.5	15	0.4
정보적 위험	1,354	32.2	1,310	31.1	44	1.0
폭력경험	2,987	70.7	2,670	63.4		

자료: 사회복지사 안전확보를 위한 폭력 경험 등에 관한 종합실태조사연구(2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클라이언트 폭력 발생 원인>

(Base: 전체 응답자, n=4,210, 단위: 명, %)

클라이언트 폭력 발생 원인	빈도	비율
클라이언트의 문제	1,611	38.3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클라이언트의 불만	816	19.4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및 낮은 권위	609	14.5
클라이언트가 느끼는 대인관계 및 스트레스 해소에서의 어려움	276	6.6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한 클라이언트 욕구의 미충족	197	4.7
서비스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문제	191	4.5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의사소통상의 오해	166	3.9
클라이언트와의 라포 형성 미흡	135	3.2
폭력에 대한 시설/기관의 인식 부족	118	2.8
사회복지사의 전문지식, 경험 및 기술의 부족	47	1.1
서비스제공 과정상의 문제	44	1.0

자료: 사회복지사 안전확보를 위한 폭력 경험 등에 관한 종합실태조사연구(2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 유조안 외, 「사회복지사 안전확보를 위한 폭력경험 등에 관한 종합실태조사연구」, 2021,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이러한 인권침해 실태 및 사회복지사의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사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현재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종사자의 근무제도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권익침해 상담·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권익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음.

< 기초자료 활용 관련 유사입법례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6(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2조(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에 관하여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하 생략)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다만, 개정안 제3조제7항에서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실태조사 실시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있다는 점과 이미 현행법 시행령³⁾에서 실태조사의 시기,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③ 실태조사의 시기,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의 시행령 이외에 시행규칙을 새로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보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수정 수용)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
태조사에 인권침해 실태를 포함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하려는 개정안에는 동의하나,

이미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실태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이 규
정되어 있으므로 개정안 제3조제7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
정이 필요함.

* (법시행령 제3조제3항) 실태조사의 시기,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수용)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
단체장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범위에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실태를 포함하는 것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서 필요한 입법으로 개정안에 찬성함.

문 의 처
02)6788-5497